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『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『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』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4년 8월 14일

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3제 1항에 따라 장기근속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
-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여 장기재직자에 대한 공로를 치하하고, 활기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별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 (안 제20조제6항 신설)
 -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 -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0일
 - 재직기간 30년 이상 : 10일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5일(18:00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(참조 : 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, 전화 032-440-6262, 팩스 032-440-8784, 이메일 : bks3245@korea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제 출 자	해당사항	찬반여부 및 사유	비 고
○ 주 소 :			
○ 성 명 :			
○ 연락처 :			

※ 다른 서식 사용 가능

4. 붙임자료

-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 규정」 제7조제2항에 의한다.

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: 10일
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10일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특별휴가) ① ~ ⑤ (생 략)	제20조(특별휴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<u>⑥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 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 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 이 따로 정한다.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「지방공무원 복무규 정」 제7조제2항에 의한다.</u> <u>1.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 만 : 10일</u> <u>2.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 만 : 10일</u> <u>3. 재직기간 30년 이상 : 10일</u>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	☐ 지방공무원법 ☐ 제59조(위임규정) 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☐ 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 ☐ 제7조의3(특별휴가) “세부내용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사항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사항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

【지방공무원법】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
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】

제7조(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)

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, 휴직기간·정직기간·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 <개정 2011.3.7.>

1. 임신·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(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,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)
2.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
3.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

제7조의3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3항 관련)

1. 비용 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본 개정안은 「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제20조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첨부 함

⇒ 특별휴가는 휴가 미실시에 따른 보상비가 발생하지 않음

4. 작성자

- 교육위원회 박 승 희 의원